

T.V. 방송사가 사적으로 고용한 조사원 등이 정신적 갈등에 관한 전화상담을 하는 개인회사 사무실에 기망의 방법으로 들어가 상담원과 업무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그 광경과 내용을 숨겨진 카메라로 녹화한 것은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KERSIS v. CAPITAL CITIES/ ABC INC.

223 Med. L. Rptr, 2321(캘리포니아 항소법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994 편 4 월)

사건개요

1. 이 사건 원고들인 Kersis 와 Sanders 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갈등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일을 주로 하는 Psychic Marketing Group 이라는 회사(이하 PMG 라 함)의 전화 상담원들이다. ABC 방송국은 조사원인 피고 Lescht 와 Bell 을 사적으로 고용하여 이들이 1993 년 2 월 18 일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PMG 의 사무실을 찾아가 원고들과 인사하고 그들의 활동 내용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2. 그러나 이러한 원·피고들 사이의 대화장면과 그 내용이 원고들이 감지하지 못한 가운데 몰래 설치된 카메라에 담겨졌고, 편집된 내용이 같은 날 ABC 방송 「Prime Time Live」 프로그램에 「Hello, Telepsychic」 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방영되었다. 방영된 주체는 주로 전화번호 900 번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정신적 충고를 해주는 PMG 의 신종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3. 그러자 원고들은 취재에 참가한 위 피고들과 방송사인 ABC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의 청구원인은 ① 피고들이 캘리포니아 형법전 632 조가 금하는 은밀한 대화 장면에 대한 불법적인 도청 및 녹화를 하였고, ② 개인적이고 사적인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며, ③ 개인적, 신상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였고, ④ 사실을 왜곡보도하였으며, ⑤ 고의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고, ⑥ 과실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며, ⑦캘리포니아 주헌법 제 1 조 제 1 항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이었다.
4. 피고들은 원고들의 ①③④⑤⑥ 청구원인이 그 주장자체로서 이유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기각을 구하였다. 법원은 그 중 취재된 내용에 대한 보도행위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③④의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들의 기각청구를 받아들였다.
5. 그러자 피고들은 ①②⑤⑥⑦ 청구원인에 대하여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구하였다.

판결요지

1.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 한 진실에 입각한 보도행위 그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뉴스가치가 있는 보도인지 여부는 ① 보도내용의 사회적 가치, ② 보도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어느 정도 깊이 침투하였는지, ③ 보도의 내용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④ 주가 그 사실의 보도를 막아야 할 이익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도행위 그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사안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다소의 왜곡보도도문제가 될 수 없다.

2. 그러나 무단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고 수위가 지키고 있는 개인회사 건물에 기망의 방법으로 들어가 사무실이나 식당 한구석에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유부남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자고객에 대한 전화상담내용등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각 나눈 대화를 원고들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이 제 3 자에게 노출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불법적인 도청이나 녹화가 금지되는 은밀한 대화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원고들의 사무실내 대화를 은밀하게 녹화한 TV 방송국의 행위는 캘리포니아 주헌법 제 1 조 제 1 항의 사적자치권(autonomy privacy)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판결이유(요약)

1. 캘리포니아 형법전 632 조가 금하는 은밀한 대화장면에 대한 불법적인 도청 및 녹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녹화된 대화의 은밀성 여부 판단)

가. 캘리포니아주 형법 632 조(c)에서 도청 등을 금하는 은밀한 대화란 어느 한쪽 당사자라도 그 내용이 제 3 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주지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말한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Kersis 가 PMG 회사의 식당 한구석에서 유부남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해준 전화상담내용을 소재로 하여 매우 작은 목소리로 피고 Bell 과 나눈 대화가 원고 Kersis 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제 3 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원고 Sanders 도 피고 Lescht 와 타인의 출입이 없는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피고 Lescht 는 마치 카운슬링을 희망하는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Sanders 는 Lescht 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100 점 만점에 30 점밖에 안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녀에게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을 조언해 주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배심원은 Sanders 도 역시 제 3 자가 그 대화내용을 듣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한 녹음된 대화내용을 검토하면 자신이 PMG 회사의 산디에고 사무실에서 전근해 왔다고 하는 사람이 대화에 잠깐 끼어드는데 그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당초부터 예상된 대화의 구성원이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좀더 심리하여 밝힐 필요성이 존재한다.

2. 혼자 있거나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타인의 사적인 일에 물리적인 방법 등을 써서 끼어드는 경우에는 그 끼어드는 방법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에게 매우 공격적인 것이라고 느껴질 정도라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Miller v. National Broadcasting Co. (1986) Cal. App. 3d 1463) 피고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약식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대화가 형법상 보호될만한 은밀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당연히 원고들은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Comeaux v. Brown & Willimson Tabacco Co.(9th Cir. 1990)판결을 인용하여 기망에 의하여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합리하게 공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omeaux 는 본 사안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사립탐정이 기망의 방법으로 사고 피해자가 있는 병실에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하게

공격적인」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들이 PMG 에 들어간 것은 『불합리하게 공격적인』 행위이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단순히 정보만을 수집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망행위가 캘리포니아 형법전 032 조(a)에 따라 징역 1 년까지의 형사상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이처럼 형사상 처벌대상인 피고들의 행동이 문명사회에서 통상 인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가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헌법상 프라이버시의 권리침해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법적으로 보호되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를 전파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법적 이익(·정보 프라이버시)과, 둘째는 사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사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감시나 침입 또는 기타의 방해를 받지 않을 법적 이익(자치 프라이버시)이 그것이다. 원고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녹음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적인 활동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 후자의 자치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가지며 이는 캘리포니아 형법 630 조 및 632 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다. 피고들은 가사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방송국의 뉴스보도가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하는 법익이고 더욱이 미연방헌법 수정 1 조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공공의 이슈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이므로 피고들의 약식판결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지 보도매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프라이버시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적 녹음을 처벌하는 캘리포니아 형법등에의 위반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서 피고의 방송행위 그 자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들의 약식판결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